

# 일본(오사카) 콘텐츠 산업동향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4년 01호

# 오사카 콘텐츠산업 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OSAKA

2024년 1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	-----	----------

방송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판)
----	-------------------------------

방송, 법령

해당 보고서는 総務省의 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改訂版)【第 8 版】  
를 번역·발췌한 보고서임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오사카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4.11.29.



## 방송

### I.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판)

#### 작성 순서

1. 서론 (1.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 배경, 2. 가이드라인의 내용)
2. 서면의 교부
3. 거래가격의 결정
4. 저작권의 귀속
5. 거래내용의 변경/재작업
6. 취업환경의 정비
7. 기타
8. 향후 계획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 1 서론



##### 1.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 배경

- ✔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에 관해서는 2003년 하청 대금 지연 지급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1956년 법률 제 120호, 이하 '하청법'이라고 함)의 개정으로, 주로 '정보 성과물 작성 위탁'에 해당하는 거래가 해당 법의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음. 이에 따라 총무성은 2008년 1월부터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검토회"(좌장: 당시 리츠메이칸대학 법학부 교수 후나다 마사유키)를 개최하여, 2009년 2월에 터널 회사 규제, 발주서의 교부 및 계약서의 교환, 저가 구매 등의 구체적 사례와 그 해설을 중심으로 한 "방송콘텐츠 제작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 ✔ 그 후 2009년 7월에는 제 2판(애니메이션 제작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 사례 추가), 2014년 3월에는 제 3판(소비세 인상에 따른 대응 추가), 2017년 3월에는 제 4판(하청 중소기업 진흥법 제 3조 제 1항에 따른 진흥 기준 개정 반영), 2017년 7월에는 제 5판(가이드라인의 대상 범위에 위성방송 사업자 및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 추가) 등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
- ✔ 그리고 2018년 6월 15일에 각의 결정된 "규제 개혁 실행 계획" 및 정보통신심의회 최종 답변서 "시청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 촉진 방안"(2018년 8월 23일)을 토대로, 총무성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콘텐츠의 적정한 제작 거래 촉진에 관한 검증·검토회의"(좌장: 리츠메이칸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후나다 마사유키)를 개최하여, 학계 전문가, 관련 부처, 방송

사업자 및 프로그램 제작사의 관계 단체 등과 논의를 거듭하여, 2019년 8월에 전체 구성을 재검토한 제 6 판으로서 개정하였음

- ✔ 또한, 총무성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2019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조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검증·검토회의에서 논의를 재개하고, ①업무 위탁 유형별 저작권 귀속의 명확화, ②원청 프로그램 제작사가 재위탁을 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사 간의 제작 거래 적정화, ③3 조 서면에 관한 기재 내용의 명확화 및 용역 위탁을 포함한 발주 서식의 충실화, ④각종 사례의 추가 등을 거쳐 2020년 9월 제 7 판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였음
- ✔ 이후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조사" 및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실태 조사"(설문조사) 결과나, 2021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가격 협상 촉진 월간" 후속 조사에서 "방송 콘텐츠"의 업종별 가격 전가율이 27개 업종 중 26위로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부터 검증·검토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검토회에서는 저작권의 귀속 및 적정 제작비의 책정 방안을 중심으로 발주자 및 수주자 업계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프로그램 제작 현장의 근로 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제 8 판 개정 내용을 종합하였음

## 2. 가이드라인의 내용

### ✔ 제정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사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해하는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양질의 매력적인 방송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앞으로 방송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다 적정한 프로그램 제작 위탁 거래를 실현함으로써, 양자 간의 건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 ✔ 대상 방송 사업자 및 프로그램 제작사

-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 방송 사업자는 지상 기초 방송, 위성 기초 방송, 위성 일반 방송, 유선 텔레비전 방송 등을 포함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자이며, 프로그램 제작사는 해당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는 자로 한정됨.<sup>1)</sup> 단,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2차 하청 애니메이션 제작사(프리랜서 포함) 간의 거래는 경제산업성의 "애니메이션 제작업계 하청 적정 거래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년 8월)에 따르고 있음

### ✔ 3. 대상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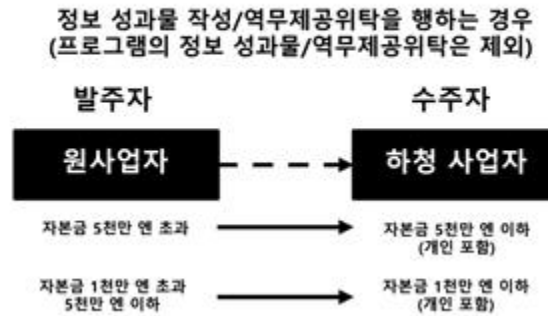
- 이번에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로는 민상법 및 형법 등 일반법 외에 하청법,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 독점금지법, 방송법, 저작권법 등이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주로 하청법 및 독점금지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하청법은 독점금지법을 보완하는 법으로, 하청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라 하더라도 독점금지법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저작권 귀속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판단됨. 아울러, 방송 콘텐츠 진흥의 측면에서는 방송법의 목적도 고려하고 있음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BS 방송, 동경 110도 CS 방송, 동경 124/128도 CS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 등이 대상이 된다. (地上テレビジョン放送、BS放送、東経110度CS放送、東経124/128度CS放送、ケーブルテレビ等が対象となる。)

· 가. 하청법

- 방송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사가 다음 참조 도표에 표시된 관계에 있을 경우, 원사업자는 방송 사업자, 하청 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사가 되며, 방송 사업자는 서면 발주 등 4 가지 의무와 대금 지급 지연 등의 11 가지 금지 사항에 대해 하청법의 규제를 받게 됨. 또한, 프로그램 제작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다음 참조 도표에 표시된 관계에 있을 경우, 발주한 프로그램 제작사가 원사업자, 수주한 프로그램 제작사가 하청 사업자가 됨

· 원사업자와 하청 사업자의 범위  
(참조도)



· 나. 프리랜서 · 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

- 방송 사업자나 프로그램 제작사와 거래하는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2024년 11월 1일에 시행되는 프리랜서 · 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 및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 각종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프리랜서 · 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이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 위반과 동시에 관련될 경우,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 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이 우선 적용됨

· 다. 독점금지법

- 예를 들어, 발주자가 수주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해당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저가 매입 등)는 금지됨(소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우월적 지위에 관한 설명은 아래 4.에서 상세히 다룸

· 라. 저작권법

-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지만, 법인 등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법인 등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음. 이때, 실제로 어떤 사업자의 직원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에 따라 저작권이 발주자와 수주자 중 어느 쪽에 귀속될지 결정됨.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 29 조에 따라 영화 저작물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진 자가 ‘영화 제작자’로서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되므로, 아래에서 다룸 ‘제 3 장 1. 저작권의 귀속, 창구업무’ 등과 같이, 제작의 실태를 고려하여 거래 대상인 방송 프로그램의 ‘발의와 책임’을 발주자와 수주자 중 어느 쪽이 가지는지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이 결정됨

· 마. 방송법

- 이 가이드라인 전반을 통해, 방송 사업자의 행위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위탁 거래 등 거래

행위의 형태가 방송법의 목적인 공공복지에 부합하는 방송 규율과 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문제됨

4. 우월적 지위에 관한 견해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하청법이나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뿐만 아니라 독점금지법에 기초하여 사례 해설을 제공하고 있음.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적용을 검토함에 있어 방송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용역 위탁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2017년 6월 16일)에서는 지속적인 용역 위탁 거래에서 위탁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

위탁 거래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란,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거래 지속이 어렵게 될 경우 경영상 큰 장애를 초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요구를 해도 수탁자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위탁자의 시장 내 지위, 수탁자의 거래처 변경 가능성, 기타 위탁자와의 거래 필요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사실(거래 당사자 간 사업 규모 차이, 거래 대상 용역의 수급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용역 위탁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2017년 6월 16일)

(( 出典 ) 公正取引委員会「役務の委託取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針」(平成29年6月16日))

-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 의존도', '위탁자의 시장 내 지위', '거래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거래에서 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
  - 주로 하나의 방송사업자와만 거래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제작사의 거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 지상파 기간방송사업자는 각 방송권역에서 2~5 개사 정도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지상파 기간방송사업자의 수가 적어 개별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해지며, 거래 상대방 선택의 폭이 좁아짐
  - 프로그램 제작사는 중소기업이 많아 방송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크다고 판단됨
  - 프로그램 제작사의 입장에서 여러 방송사업자와의 거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다른 방송사업자로 변경하는 사례는 적음
-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프로그램 제작사 간의 거래에서도 발주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용역거래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또한, 방송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참고 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2009년 1월 23일)를 다음과 같이 인용함

제 4 독점금지법 및 하청법상의 평가

애니메이션 제작 위탁에서의 거래 실태를 토대로 독점금지법 및 하청법상의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의 수탁제작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

발주자가 수탁제작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그때그때의 거래 환경에 따라 다양하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주 21). 그러나 ①위탁거래의 일반적 특성으로, 발주자가 수탁자에게 제작을 위탁한 성과물은 발주자의 사양 등에 기초한 특수한 것이 많아 범용성 있는 상품과는 달리, 발주자가 성과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해당 성과물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②TV 방송국과 원청제작사의 거래에 있어서는 현재 일본에서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 있어 지상파 TV 만큼 강력한 매체가 없으며, 지상파 TV 방송국에서 방영되는지 여부가 DVD 판매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작품의 매출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 ③원청제작사와 하청제작사의 거래에 있어서는 하청제작사가 소규모 사업자가 많다는 사정이나 매출의 대부분을 특정 사업자로부터의 수탁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TV 방송국이나 원청제작사 등 발주자의 수탁제작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주 21: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란,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와의 거래 중단이 사업 경영상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위탁자의 시장 내 지위, 수탁자의 거래처 변경 가능성, 거래 당사자 간의 사업 규모 격차, 거래 대상이 되는 성과물의 수급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용역위탁거래 가이드라인 제 1 2).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애니메이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48페이지 (2009년 1월 23일)

(出典) 公正取引委員会「アニメーション産業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48頁(平成21年1月23日)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cyosa/cyosa-ryutsu/h21/090123\\_files/090123houkokusyo01.pdf](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cyosa/cyosa-ryutsu/h21/090123_files/090123houkokusyo01.pdf)>

5. 가이드라인의 구성

-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서장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책정 배경, 목적 및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을 제시함
- 제 1 장~제 6 장에서는 '서면의 교부', '거래가격의 결정', '저작권의 귀속', '거래내용의 변경·재작업', '근무환경의 정비' 등의 주제별로 하청법 또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하청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에 관한 운용기준'과 독점금지법의 지침 등에 비추어 하청법 또는 독점금지법상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함. 또한, 하청법 또는 독점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례나 거래에서 더욱 권장되어야 할 바람직한 거래 사례 등을 들어, 거래 적정화를 위해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 또한,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등 법상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부기함
- 한편, 제 1 장~제 6 장의 각 장에서 제시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 사례'는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 내용에 따른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 사례인 만큼,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제작사 등 관계자들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 거래에 있어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위반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거래에 임해야 함

6. 용어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에서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가. '제작'
  - 각 방송사업자나 제작사에서는 '제작'이라는 용어에 대해 각각 사용 방식이 다름. 저작권의

- 유무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작'으로 통일함
- 다만, 경제산업성의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에서의 하청 적정거래 등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년 8월)에 따라, '애니메 제작회사'는 '애니메 제작회사', '애니메 제작'은 '애니메 제작'으로 표기함<sup>2)</sup>
  - 나.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sup>3)</sup>
    - 제작사의 발의와 책임하에 제작되어, 기획, 촬영, 녹화, 제작 및 편집까지 모두 자사의 책임으로 수행하여 기술적인 사양을 충족시켜 언제든지 방송할 수 있는 상태의 프로그램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납품된 것을 말함.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주한 제작사에 저작권이 귀속됨
    - 한편,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제작 실태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로부터 프로듀서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듀서의 참여가 형식적인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와 제작사의 '공동제작' 등이 아닌,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으로서 제작사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 또한,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는 영상(독립된 코너 등)이라 하더라도 제작사의 발의와 책임하에 제작된 것이라면 제작사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 다. '레귤러 프로그램'
    - 특정 방송 기간 동안 같은 요일이나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임
  - 라. '소재'
    -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한 영상이나 해당 영상 등을 담은 녹화·녹음 테이프 등을 말함
  - 마. '창구업무'
    - 방송 프로그램을 이차 이용할 때 창구로서 거래 상대방을 찾는 노력을 하거나, 계약이 성사된 경우 해당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대가를 환원하는 등의 업무를 말함
  - 바. 약칭에 대하여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좌측 란의 법령 등에 대하여 우측 란의 약칭을 사용하기로 함

정식명칭	명칭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1956년 법률 제 120호)	하청법

2) 저작권법 제16조에서는 저작물의 형성 프로세스의 일부분에 대해 "제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법(영화저작물의 저작자) 제16조 영화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영화저작물에서 개작되거나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그 외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여 해당 영화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단, 전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著作権法第16条では、著作物の形成プロセスの一部については「制作」の用語を用いている。著作権法(映画の著作物の著作人)第16条 映画の著作物の著作人は、その映画の著作物において翻案され、又は複製された小説、脚本、音楽その他の著作物の著作人を除き、制作、監督、演出、撮影、美術等を担当してその映画の著作物の全体的形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とする。ただし、前条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프로그램의 정의는 방송법 제2조 제28호의 "방송프로그램"의 정의(방송할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및 배열을 말한다)에 준한다.

(番組の定義は、放送法第2条第28号における「放送番組」の定義(放送をする事項の種類、内容、分量及び配列をいう。)に準ず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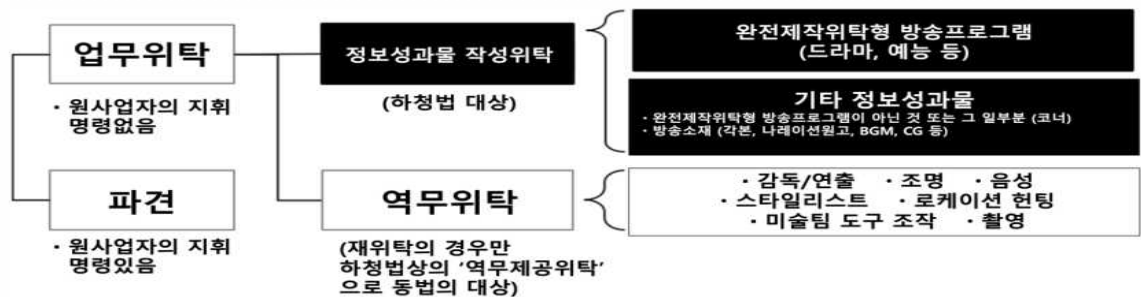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쇼 1970년 법률 제 145호)	하청진흥법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제 3조 제 1항의 규정을 기초로 한 진흥기준 (2024년 3월 25일 시행)	진흥기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1947년 법률 제 54호)	독점금지법
역무 위탁 거래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방침 (2017년 6월 16일 개정)	역무거래 가이드라인 (*상기 가이드라인에는 '역무의 위탁거래'란, 역무제공의 위탁거래 및 정보성과물 작성의 위탁거래에서 성립되고, 이 역무의 위탁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상을 총칭하는 경우에는 "역무"라고 칭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에 관한 운용기준' (2024년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장통달 제 4호)	운용기준
하청거래 적정화추진 강습회 텍스트 (2023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하청거래 적정화추진 강습회 텍스트
특정수탁사업자 관련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법률 제 25호)	프리랜서/사업자간 거래 적정화 등 법

- 이하 문언에 대해서도 좌측의 용어를 우측과 같은 약칭을 사용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회사	'제작회사'라고 표기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송국의 자회사인 제작회사와 그 이외의 제작회사 모두에 대한 기술이 있지만, 자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기한다. 또한 제작회사간의 거래에 대해서 발주한 제작회사를 원청, 수주한 제작회사를 손청이라고 명기한다.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 2조 제 26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를 말하지만, 본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방송국'이라 하고, 이하 약칭으로 '국'으로 표기한다.

7.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한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계약 형태

-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한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계약 형태는 주로 '업무위탁'과 '파견'으로 분류되며, '업무위탁'은 '정보성과물 작성위탁'과 '용역위탁'으로 분류됨. 하청법은 '정보성과물 작성위탁' 및 용역위탁을 재위탁하는 경우<sup>4)</sup>에 '용역제공위탁'으로 적용됨. '정보성과물 작성위탁'에 해당하는 것은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과 '기타 정보성과물'임(아래 그림<sup>5)</sup> 중 검은색 부분)



4) 원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용역의 경우, 하도급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親事業者が自ら用いる役務の場合、下請法は適用されない。)

5) "촬영"에 대해, VTR 등 "정보성과물"의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에 해당한다.

(「撮影」について、VTR等「情報成果物」の納入を求める場合には、情報成果物作成委託に該当する。)

- 또한, '용역위탁'의 재위탁으로서 하청법상의 '용역제공위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국 등으로부터 디렉터,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어시스턴트 디렉터 등 복수의 인력에 대한 용역 제공을 위탁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제작사나 개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sup>6)</sup>
- 한편, 정보성과물 작성위탁과 용역제공위탁이 혼재되어 있고 일체불가분의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하청법 대상 외의 용역위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거래는 일체로서 하청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의 정보성과물 작성위탁과 제조위탁이 혼재된 거래에서의 자본금 구분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인용함

Q26 취급설명서의 내용 작성위탁(정보성과물 작성위탁)과 그 인쇄의 위탁(제조위탁)을 일체로 발주한 경우, 하청 사업자를 구분하는 자본금 구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 취급설명서의 내용 작성과 그 인쇄의 위탁에 대해 각각의 하청 대금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이들이 일체불가분의 거래로 발주된 경우에는, 정보성과물 작성위탁 또는 제조위탁 중 어느 하나의 자본금 구분에 해당하면 해당 발주는 일체로서 본 법의 대상이 된다.

단, 각각이 분리 가능한 거래로 발주된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별로 각각의 자본금 구분을 기준으로 본 법의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 즉,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하청 사업자의 자본금액에 따라 한쪽 거래만 본 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하청거래 적정화 추진 강습회 텍스트'(2023년 11월)

((出典)公正取引委員会・中小企業庁「下請取引適正化推進講習会テキスト」(令和5年11月)より)

- 반면,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은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용역제공위탁에 있어서 위탁하는 용역이 재위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법이 적용될 수 있음

## 2

### 서면의 교부



#### 1. 서면 교부는 의무사항

- ✔ 하청법에서는 정보성과물 작성위탁 거래를 할 경우, 위탁 내용에 관한 발주서면의 교부 의무가 정해져 있음. 그 서면에는 지급 대금의 금액이나 지급기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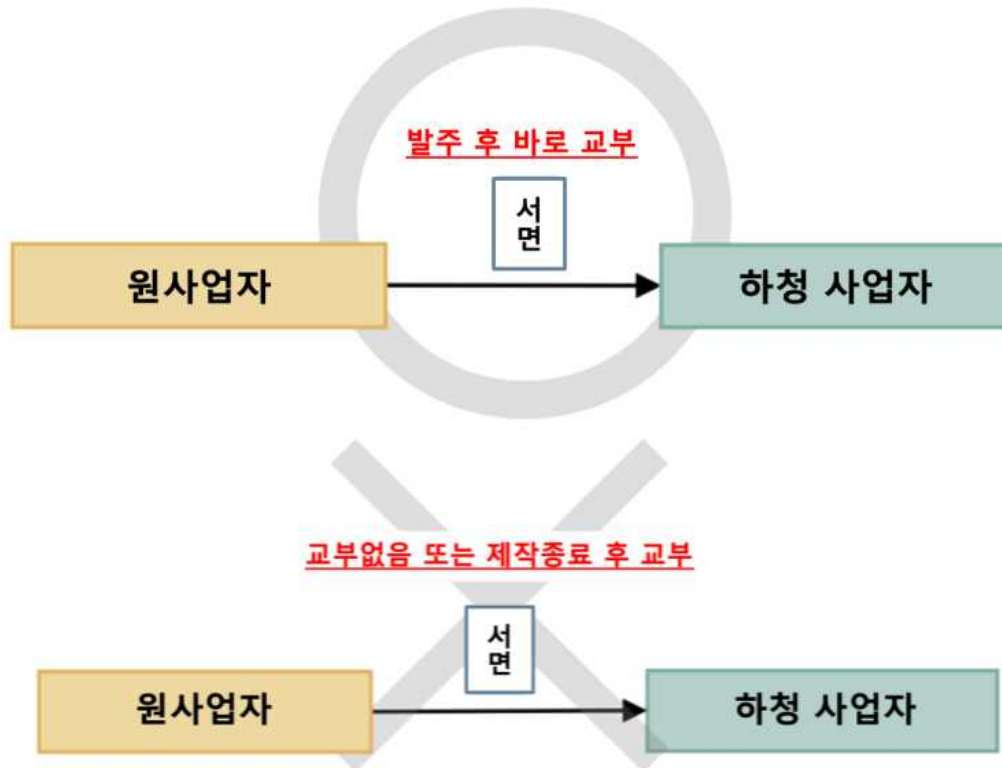
#### 2. 서면은 즉시 교부

- ✔ 서면은 발주 시 즉시 교부할 의무가 있음(※1). 종이를 통한 교부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적 기록 제공 방법도 가능함(※2)

6) (출처): 방송콘텐츠 적정거래추진협의회 "알기 쉬운 방송콘텐츠 적정거래 텍스트" 29페이지 (2021년 9월)

((出典): 放送コンテンツ適正取引推進協議会「よくわかる放送コンテンツ適正取引テキスト」29頁(令和3年9月))

<[http://tekisei-torihiki.org/assets/guideline\\_text.pdf](http://tekisei-torihiki.org/assets/guideline_text.pdf)>



[그림 1] (출처)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제8판) 개요④ 발취.

- (※1) 서면의 필수 기재사항 중 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최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됨(단,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및 내용을 정할 예정 기일을 최초 서면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최초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청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정해야 하며,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는 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보충 서면)을 교부해야 함. 또한, 최초 서면과 보충 서면에서 같은 주문번호를 사용하는 등 상호 연관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작사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금액이 큰 경우,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해외에서의 업무 등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청법의 대상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절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계약서·각서 등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 (※2) 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하청 사업자로부터 사전 승낙이 필요하며, 사전 승낙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

### 3. 개정 사항

#### ✔ 프리랜서와의 거래의 경우

-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청법과 마찬가지로 업무위탁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3 조 통지'라고 함)이 규정되어 있음. 계약서의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의 명확화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계약서를 3 조 통지로 하는 것도 인정됨

- 또한, 전자적 방법으로 명시를 할 때에도 특정수탁사업자(업무위탁의 상대방인 사업자로서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 전자적 방법으로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SNS의 메시지 기능 등 중 발신자가 수신자를 특정하여 전송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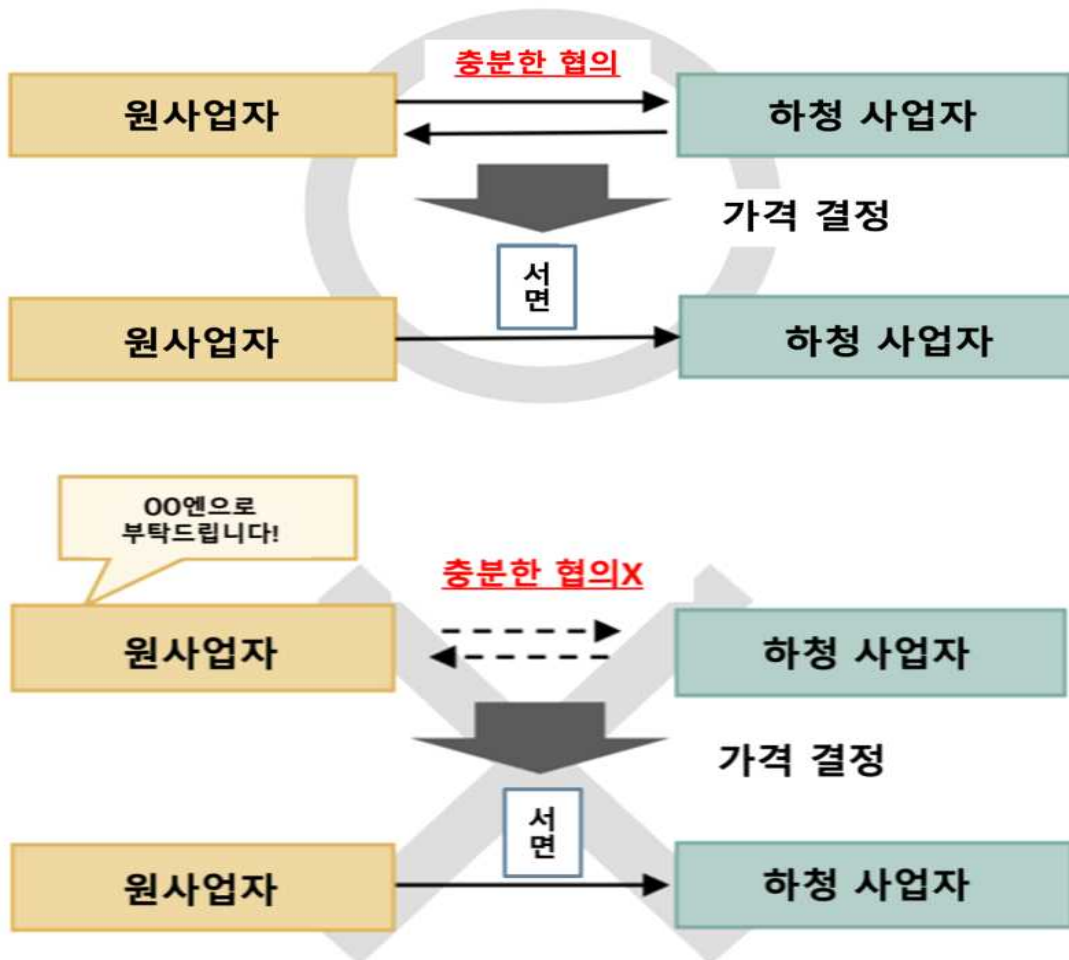
### 3 거래가격의 결정

»»

#### 1. 주요 사항

❖ 일률적인 발주 비용 삭감은 '부당한 단가 인하'에 해당될 우려

- 하청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 시 하청 대금을 결정할 때,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급부 내용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것을 '부당한 단가 인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거래 가격 결정 시 충분한 협의 없이 과거 제작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등의 행위는 하청법상 '부당한 단가 인하'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



[그림 2] (출처)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제8판) 개요⑤ 발췌.

## 2. 개정사항

### ✔ 거래 가격에 대해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

- 거래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거래 일방 당사자가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원사업자 및 하청 사업자는 최소한 연 1 회 이상의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해야 함. 지속적인 발주의 경우에도 하청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정기적인 협의에 응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인건비, 원자재비, 에너지 가격 등의 비용이 상승했거나 발주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하청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정기적인 협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해야 함

### ✔ 가격 협상 및 가격 전가의 촉진

- 계약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발주자 측의 일방적인 요청이나 발주 당시 모호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업무 내용에 맞는 적절한 가격이 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인력 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원자재 가격,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주 사업자의 비용이 상승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발주 사업자 및 수주 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한 후 거래 대가를 결정해야 함

## 4

## 저작권의 귀속



### 1. 주요사항

#### ✔ 충분한 협의 없는 저작권 양도는 독점금지법·하청법 위반의 우려

- 저작권의 귀속은 제작 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발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성과물에 관한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저작권 양도의 대가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통상적인 대가를 크게 밀도는 하청 대금을 정하는 경우는 하청법상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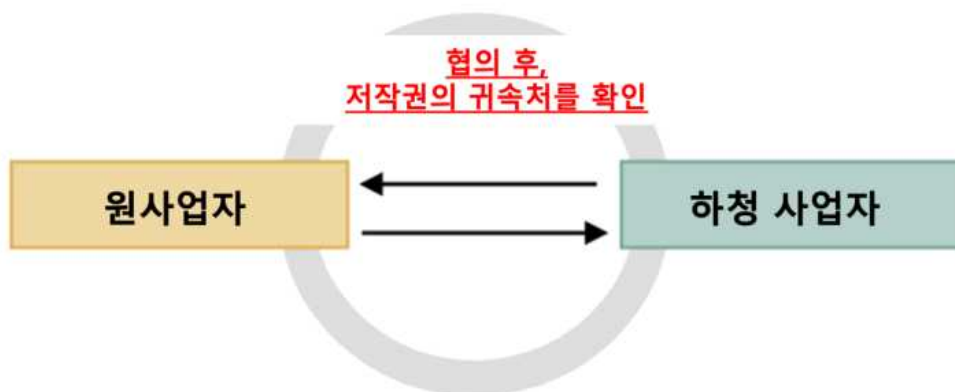




그림 31 (출처)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제8판) 개요⑥ 발췌.

## 2. 개정 사항

### ✔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정리표의 활용 방법

-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유형이나 거래의 종별에 대해 외형적으로 명확히 전달했다 하더라도, 해당 종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 내용과 제작 실태에 근거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반드시 모든 제작 거래가 본 표의 ①~⑨ 유형에 즉시 해당하는 것은 아님. 정리표를 참고하되, 우선은 사전 협의에서 계약 형태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방송국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저작권이 자사에 귀속된다는 전제로 제작사에 기획을 모집한 경우라도,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역할 분담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결과로 저작권이 제작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양도가 이루어질 때는, 이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방송국과 제작사의 관여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와 관계없이 창구업무의 취급이나 2차 이용 수익의 배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제작 과정에서의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2차 이용의 수익 배분 등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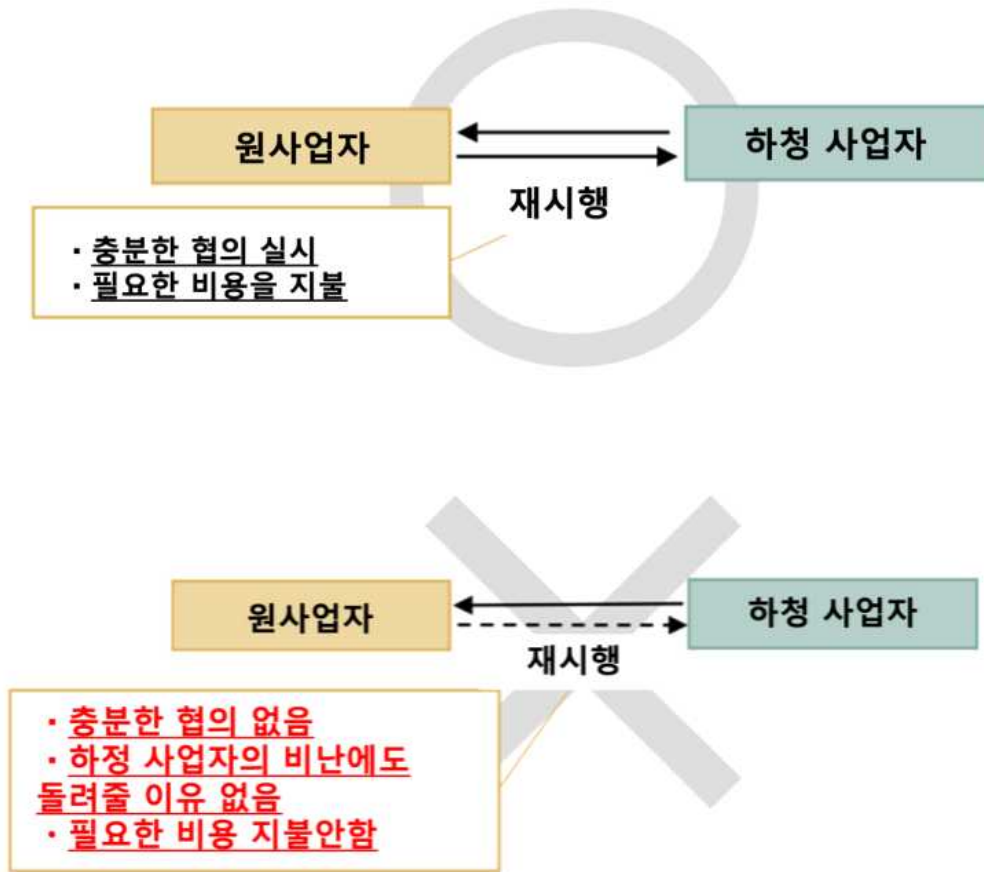
## 5 거래내용의 변경/재작업

>>>

### 1. 주요 사항

#### ✔ 수령 후의 추가 업무는 하청법·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

- 하청법에서는 하청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사업자의 거래 내용 변경·재작업으로 인해 하청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수령 후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하청법 또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음



[그림 4] (출처)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제8판) 개요⑦ 발췌.

6

취업환경의 정비 7)



1. 주요 사항

- ❖ 원사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하청 사업자에게 장시간 노동 요구는 불가

  - 원사업자는 하청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대가 없이 짧은 납기를 설정하거나 발주 내용을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 동시에, 하청 사업자에 대한 발주 시기, 방법 및 내용과 그에 따른 제작 기간과 제작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원사업자와 하청 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유 있는 제작 일정을 확보하도록 유의하고, 발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업계의 관행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함
- ❖ 제작 현장에서는 방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음

  - 방송 콘텐츠의 제작 현장에서는 원사업자와 하청 사업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 형태로 인해 여러 형태의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음. 원사업자와 하청 사업자가 각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누가 괴롭힘 방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결정해 두거나,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연수회·강습회 등을 실시하여 괴롭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7) (출처)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제8판) 개요⑧ 발췌.

7 기타<sup>8)</sup>



1. 주요 사항

- ✔ A) 지급 기일은 VTR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다:

  - 하청법에서는 '하청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서, 원사업자가 VTR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청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프리랜서와의 거래가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이며,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보수의 지급 기일을 정하여 해당 일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 B) 거래처의 사정을 이유로 한 감액:

  - 하청법에서는 하청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하청 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출연자 선정을 했을 때 출연료가 고액이 된 것을 이유로, 하청 사업자에 대한 발주 금액이 당초의 교부 문서보다 감액된 경우는 하청법상 문제가 됨. 프리랜서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수를 감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 C)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의 방송국 인세:

  -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2 차 이용의 수익 배분(예: '방송국 인세'의 너무 긴 설정 기간이나 너무 넓은 설정 권리 범위, 너무 높은 요율 등)이나 2 차 이용 허락의 청구 등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제작위원회의 구성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 D) 하청 사업자의 진흥을 위한 노력:

  - 발주자는 근로 환경의 문제를 하청인 수주자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공급망 전체에서의 인권 침해와 근로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야 하며, 발주자·수주자 간에 각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 후, 업계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인재 확보에 대해 고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또한, 인권 침해와 근로 방식에 대한 배려는 국내 제작 현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함. 이상을 토대로, 공급망 전체의 부가가치 향상과 발주자·수주자 간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기 위해, 특히 발주자는 하청 기업과의 바람직한 거래 관행(거래 적정화의 중점 5 과제)을 선언하는 '파트너십 구축 선언'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음

7 향후 계획



- ✔ 총무성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 거래 적정화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조사를 실시함. 본 조사에서 발주자 측의 부적절한 실태가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하청 중소기업 진흥법에 따른 지도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실시하여, 제작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추가적인 적정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

8) (출처)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제8판) 개요<sup>9)</sup> 발췌.



오사카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백승혁 센터장                      +81-80-2500-2623                      luciabaek@kocca.kr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4년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백승혁 (오사카비즈니스센터장)
집필자	日本 総務省
발행인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발행일	2024년 11월 29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원문 출처 포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